

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 보고

의안 번호	4221
----------	------

2025. 1. 16.
총무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. 8. 박철수 의원

나. 회부 일자: 2025. 1. 8. 회부

다. 상정 일자: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(2025. 1. 16.) 상정,

“수정의결”

2. 제안 요지

가. 제안 이유

- 광양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기본이념,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~제3조)
- 재능기부의 유형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포상,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, 안 제8조)

3. 검토 의견

-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,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,
- 본칙 총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본칙에는 목적, 기본이념, 정의(안 제1조~제3조), 재능기부의 유형(안 제4조), 시장의 책무(안 제5조),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(안 제6조), 포상(안 제7조), 시행규칙(안 제8조) 등을,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음.
- 시민 참여와 공동체 발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기반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령 및 조례안의 내용과 조문 체계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.

5. 심사 결과: **수정의결**(박철수 의원 회피, 출석위원 5명)

※ 수정 이유 및 내용은 수정안 참고

6. 소수의견의 요지: 해당 없음.

붙임 1.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2.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

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4221-1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. 16.
제안자 : 총무위원장

1. 수정 이유

- 재능기부의 유형을 세분화함.

2. 수정 내용

- 안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신설함.

6. 교육 분야: 학업, 평생교육, 인문 소양, 직업교육 등

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교육 분야: 학업, 평생교육, 인문 소양, 직업교육 등

신·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재능기부의 유형) 이 조례 에서 정의하는 “재능기부”의 유 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6. (생 략)</p>	<p>제4조(재능기부의 유형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교육 분야: 학업, 평생교육,</u> <u>인문 소양, 직업교육 등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

(제정안+수정안)

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광양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1. 사회의 다변화·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
2.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부상조
3.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재능기부”란 개인,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, 경험, 기술 등의 재능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4조(재능기부의 유형)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“재능기부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률 분야: 노무, 세무, 행정 등
2. 의료 분야: 의료, 보건, 건강관리 등
3. 문화예술·체육 분야: 공연, 전시, 연주, 행사, 생활체육지도 등

4. 전문기술 분야: 농림, 수산, 축산, 식품, 건축, 토목, 미용, 디자인, IT(정보기술) 등
5. 사회복지 분야: 보육, 상담, 간병 및 가사지원 등
6. 교육 분야: 학업, 평생교육, 인문 소양, 직업교육 등
67.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

제5조(시장의 책무)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,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재능기부 활성화 사업)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
2.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3.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, 지원 및 연계 체계 구축
4.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1조에 따른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

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에는 「광양시 포상 조례」
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